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9월 16일, 안호영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9월 1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2025.11.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6.2.4.) 상정, 축조심
사, 의결(수정가결)

제1차 전체회의(2026.2.6.)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
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안호영의원)

최근 온라인 쇼핑의 급속한 확산으로 택배와 유통 과정에서 사용되는 1회용 포장재의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자원 낭비와 폐기물 발생, 과도한 포장으로 인한 환경 부담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비고 11호에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으로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1회용 포장은 포장공간비율 50% 이하, 포장횟수 1차 이내’로 규정하고, 2년간의 계도 기간을 마련하여 업계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있음. 계도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포장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 위반 업체 조사, 관련 통계 작성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나 현재의 행정체계로는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워, 관리의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됨.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포장기준의 적정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개정안은 한국환경공단에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센터에서 포장기준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보받은 위반사항에 대해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9조의5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①·② (생략)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告示)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u>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조자등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의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u>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이하 같다) 또는 <u>제9조의5에 따른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장은</u> ----- ----- <u>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u> -----.
<신설>	④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장은 제

<신 설>

④ (생 략)

<신 설>

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의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제4항에 따라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제9조의5(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포장기준(이하 이 조에서 “포장기준”이라 한다)의 이행 여부를 효율적으로 점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재활용 촉진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포장기준의 이행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자료 수집 2. 포장기준 위반 의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3. 포장기준 관련 통계 작성 및 이행 실태 분석 4. 포장재 감량·재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지원 및 자문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

현행법은 과대포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을 저감하기 위해 제품·수송(택배) 포장 규제를 시행중¹⁾이며, 제품의 경우 1993년부터 시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①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포장재질·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준
2. 합성수지재질(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 ② 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 등 구체적인 기준은 기후에너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후에너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告示)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조자등에게 기후에너지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

행중이나 1회용 택배 포장에 대한 규제²⁾는 24년 4월 도입된 후 2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6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³⁾임.

또한 현행법에 따른 포장기준의 이행 여부 확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며, 포장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⁴⁾으로부터 제품의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포장기준의 적용이 제품에서 택배 포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증가하고 실효적 단속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바,

포장기준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짐.

[개정안에 따른 제9조 주요 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점검 주체	지자체장	지자체장, <u>센터</u> [*] *위반사항 있는 경우 센터→지자체장 통보
검사 명령	-주체: 지자체장 -대상: 지자체장이 확인한 위반사항	-주체: 지자체장 -대상: 지자체장이 확인한 위반사항 <u>센터로부터 통보받은 사항</u>

하여 기후에너지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의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 ④ 기후에너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조자등에게 기후에너지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을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2)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11. 제1호 및 제2호의 제품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1회용 포장의 포장공간비율은 50% 이하, 포장 횟수는 1차 이내로 한다. 다만,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50cm 이하인 포장에 대해서는 포장공간 비율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500억원 미만인 자가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 횟수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3) 포장기준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 4)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이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포장기준 이행여부 확인 및 검사 명령 실적]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현장 점검	검사 명령	현장 점검	검사 명령	현장 점검	검사 명령	현장 점검	검사 명령	현장 점검	검사 명령
소계	17,947	132	26,239	131	21,127	171	23,119	225	24,598	139
서울	1,520	46	1,277	12	781	82	446	50	494	34
부산	1,537	2	1,855	3	1,920	6	2,423	4	2,647	4
인천	525	7	708	19	470	9	398	13	401	12
대구	222	1	1,435	3	327	2	995	2	1,246	-
대전	1,094	6	1,252	8	1,840	-	1,492	10	1,104	15
광주	667	5	554	1	552	1	172	-	315	-
울산	60	7	254	6	608	3	704	3	556	-
강원	1,937	12	833	9	821	4	1,087	7	839	2
경기	3,303	14	4,878	49	3,764	30	5,070	102	6,129	51
충북	358	12	262	5	305	5	394	7	439	6
충남	1,004	5	512	1	577	18	697	1	864	3
전북	458	2	763	9	982	5	1,352	10	520	1
전남	1,111	1	1,098	3	1,104	2	1,618	7	1,708	-
경북	1,504	3	1,825	1	1,496	3	827	1	1,495	-
경남	1,572	4	3,576	-	4,040	-	4,180	3	4,214	-
제주	886	3	1,117	2	896	1	1,200	5	827	7
세종	189	2	4,040	-	644	-	64	-	800	4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센터는 한국환경공단 내에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환경공단은 이미 포장기준에 따른 포장방법·재질에 관한 검사기관으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업무의 유사성 및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보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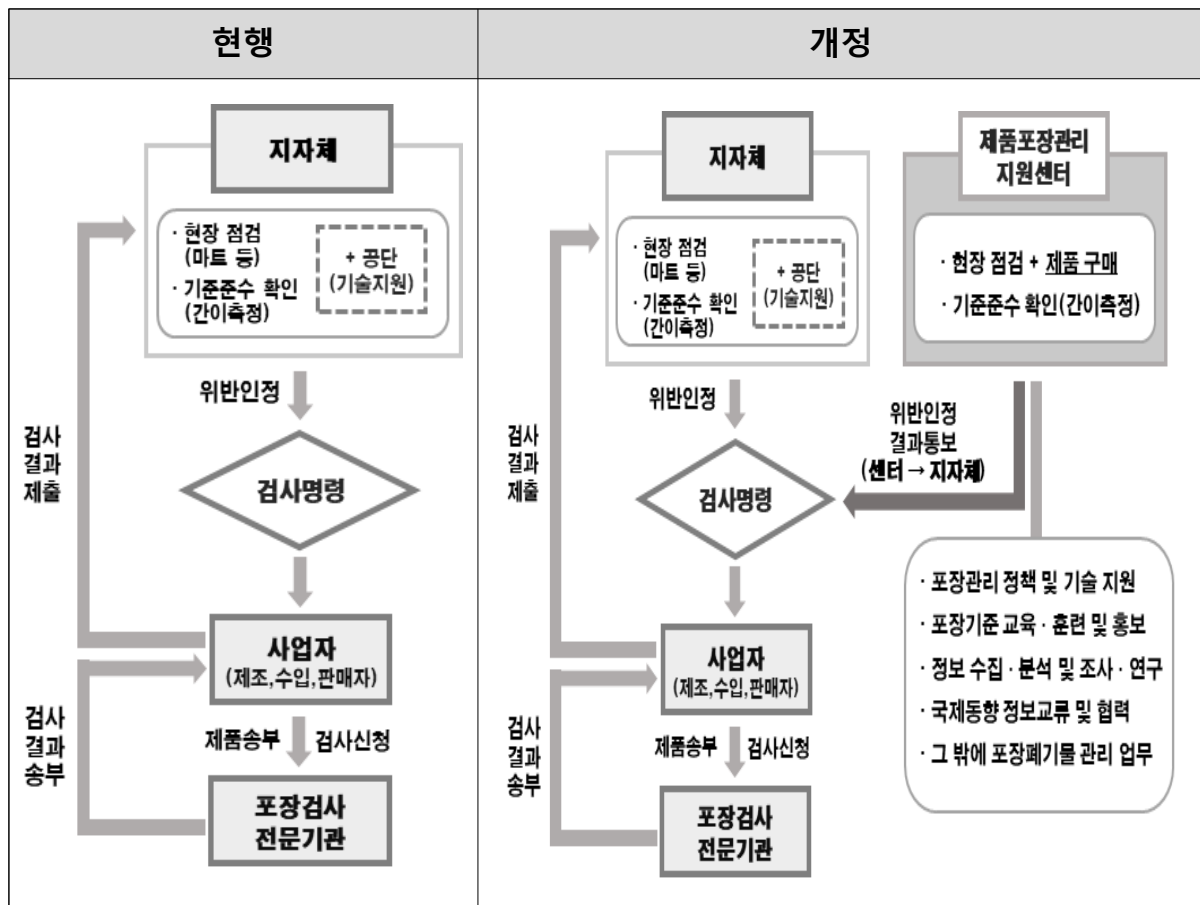
참고로 개정안은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연간 약

1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음.

[개정안에 따른 센터의 업무]

1. 포장기준의 이행여부에 대한 현장점검 및 자료 수집
2. 포장기준 위반 의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3. 포장기준 관련 통계 작성 및 이행실태 분석
4. 포장재 감량·재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지원 및 자문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개정안에 따른 업무 체계 변화]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사 입법례로, 동 법 제25조의15에서는 폐자원에너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 폐자원에너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업무를

한국환경공단⁵⁾ 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임상시험지원센터⁶⁾, 국토교통부의 녹색건축센터⁷⁾, 산업통상부의 국가광물정보센터⁸⁾ 등 센터의 설치 및 공공기관·전문기관에의 센터 업무 위탁은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품·수송(택배) 포장기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관련 지원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치·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폐기물은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⁹⁾의 취지를 감안할 때 제품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5(폐자원에너지센터) ① 기후에너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 이용 활성화 및 고형연료제품 품질 관리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폐자원에너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운영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6)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 임상시험 기반 조성 및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상시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 5. 생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상시험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3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건축공간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을 녹색건축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녹색건축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8) 「광업법」

제86조의2(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운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요 광물자원의 탐사 시 확보된 암추(岩錐) 등 지질·광물 정보를 수집·보관·관리하고 이를 분석·가공하여 정보이용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광물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9) 「폐기물관리법」

포장관리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관리·점검이 필요한데, 전담기구 설치 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관리보다는 전담기구에 의존하여 운영될 우려가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고시를 통해 포장기준 준수 측정방법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어 전담기구를 통한 측정 필요성이 낮으므로, 전담기구 설치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형동)

수정의결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9. 심사보고서 불임서류

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2.

제안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수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수정주요내용

가.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조정하는 등 용어를 정비함(안 제9조 및 제9조의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안 제9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①·② (생략)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 청장을 말한다. 이 하 같다)은 기후에 너지 환경부장관이 고시(告示)한 간이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 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조자등 에게 기후에너지환 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기후에너지 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전문기관로부터 제품의 포장방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이 하 같다) 또는 제9 조의5에 따른 제품 포장관리지원센터 의 장은----- ----- ----- ----- ----- <u>기준의 준수 여부</u> <u>를 확인할</u> -----.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① ~ ④ (개정안과 같음)

법과 포장재의 재
질에 관한 검사
받도록 명할 수 있
다.

<신 설>

④ 제품포장관리지
원센터의 장은 제3
항에 따른 확인 결
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을 위반
한 것으로 인정되
는 경우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 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사등에게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전문기

⑤ -----

----- 기후에
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
환경부령-----

④ (생략) <신설>	관으로부터 제품의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제4항에 따라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제9조의5(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장기준(이하 이 조에서 “포장기준”이라 한다)의 이행 여부를 효율적으로 점검하고, 위반행위에	----- ----- ----- ----- -. 1. ----- ----- ----- ----- ----- 2. ----- ----- ----- ----- ⑥ (개정안과 같음) 제9조의5(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 ----- ----- ----- -----
---------------------------------	---	---

<u>대한 실태조사 및</u>	-----
<u>재활용 촉진 지원</u>	-----
<u>업무 등을 수행하</u>	-----
<u>기 위하여 「한국</u>	-----
<u>환경공단법」에 따</u>	-----
<u>른 한국환경공단에</u>	-----
<u>제품포장관리지원</u>	-----
<u>센터를 설치·운영</u>	-----
<u>할 수 있다.</u>	-----.
<u>② 제1항에 따른</u>	② -----
<u>제품포장관리지원</u>	-----
<u>센터는 다음 각 호</u>	-----
<u>의 업무를 수행한</u>	-----
<u>다.</u>	--.
<u>1. 포장기준의 이행</u>	1. -----
<u>여부에 대한 현장</u>	-----
<u>점검 및 자료 수</u>	-----
<u>집</u>	--
<u>2. 포장기준 위반</u>	2.-----
<u>의심업체에 대한</u>	-----
<u>실태조사</u>	-----
<u>3. 포장기준 관련</u>	3. -----
<u>통계 작성 및 이</u>	-----
<u>행실태 분석</u>	-----
<u>4. 포장재 감량·재</u>	4. -----
<u>활용 촉진을 위한</u>	-----

	<u>정책 지원 및 자</u> <u>문</u>	----- --
	5. 그 밖에 <u>환경부</u> <u>장관이 필요하다</u> <u>고 인정하는 업무</u>	5. ---- <u>기후에너지</u> <u>환경부장관</u>--- -----
	③ <u>환경부장관은</u> <u>제1항에 따른 제품</u> <u>포장관리지원센터</u> <u>의 설치·운영에</u> <u>필요한 경비를 예</u> <u>산의 범위에서 지</u> <u>원할 수 있다.</u>	③ <u>기후에너지환경</u> <u>부장관</u>----- ----- ----- ----- ----- -----.
	④ 그 밖에 <u>제품포</u> <u>장관리지원센터의</u> <u>설치·운영에 필요</u> <u>한 사항은 환경부</u> <u>령으로 정한다.</u>	④ ----- ----- ----- ----- ----- <u>기후</u> <u>에너지환경부령</u>---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이하 같다)은”을 “이하 같다) 또는 제9조의5에 따른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장은”으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조자등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의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을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자등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제4항에 따라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제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5(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이하 이 조에서 “포장기준”이라 한다)의 이행 여부를 효율적으로 점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재활용 촉진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포장기준의 이행여부에 대한 현장점검 및 자료 수집
2. 포장기준 위반 의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3. 포장기준 관련 통계 작성 및 이행실태 분석
4. 포장재 감량·재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지원 및 자문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① · ② (생 략) ③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 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u>이하 같다</u>)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고시(告示)한 간이측정 방법에 따라 측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u>기준을 위반</u> <u>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조자등</u> <u>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u> <u>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u> <u>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u> <u>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의</u> <u>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에</u> <u>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u> <u>있다.</u> <u><신 설></u>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이</u> <u>하 같다</u>) 또는 제9조의5에 따 <u>른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장</u> <u>은</u>----- -----<u>기준</u> <u>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u>-----. ④ <u>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장</u> <u>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u> <u>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을 위반</u> <u>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별</u> <u>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u> <u>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u>

<신 설>

④ (생 략)

<신 설>

보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자등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제4항에 따라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제9조의5(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이하 이 조에서 “포장기준”이라 한다)의 이행 여부를 효율적으로 점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재활용 촉진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포장기준의 이행여부에 대한 현장점검 및 자료 수집
2. 포장기준 위반 의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3. 포장기준 관련 통계 작성 및 이행실태 분석
4. 포장재 감량·재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지원 및 자문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

	<u>로 정한다.</u>
--	---------------